한-중 FTA !! | **거대 중국 내수시장,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!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,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!**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년 2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**인터넷 방송 통신은 2월 25일 11시부터**)

산업통상자원부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 김영무(02-734-1862),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김재준(02-734-1864)		
방송통신위원회	국제협력팀장 박명진(02-2100-1331)	환 경 부	해외협력담당관 조희송(044-201-6560)
기획재정부	통상정책과장 정병식(044-215-7670) 양자관세협력과장 이재목(044-215-4470)	고용노동부	국제협력담당관 이헌수(044-202-7129)
		해양수산부	통상무역협력과장 윤상린 (044-200-5380)
미래창조과학부	국제협력총괄담당관 강병삼(02-2110-2280)	금융위원회	글로벌금융과장 탁윤성(02-2156-9792)
외 교 부	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김석우(02-2100-7675)	공정거래위원회	국제협력과장 김성근(044-200-4315)
법 무 부	출입국심사과장 김성길(02-2110-4035)	식품의약안전처	통상협력팀장 전종민(043-719-1591)
문화체육관광부	문화통상팀장 최재원(044-203-2591)	관 세 청	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(042-481-3201)
농림축산식품부	동아시아FTA과장 김수일(044-201-2061)	특 허 청	다자기구팀장 엄태민(042-481-8197)
보건복지부	통상협력담당관 남점순(044-202-2370)	산 림 청	임업통상팀장 이순욱(042-481-1830)

한-중 FTA 가서명 완료

- 양측은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-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('14.11.10일) 이후,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**2015.2.25(수) 한-중 FTA 가서명을 완료**하였다고 밝힘

○ 양측은 그동안 서울·베이징·도쿄에서 **기술협의(4회), 법률검토 회의(3회)를 진행하였으며, 제7차 RCEP 협상(2015.2.9~13) 계기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**하고,

○ **금일(2.25)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**하였음

* 기술협의(4회) : '14.12.8-12 서울, 12.17-19 서울, 12.29-31 베이징, '15.1.14-18 도쿄
법률검토 회의(3회) : '14.12.23 베이징, 12.30-31 베이징, '15.1.22 베이징

□ 이번에 가서명한 한·중 FTA 협정문(영문본)은 2.25(수) **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(www.fta.go.kr)**를 통해 **일반에 공개**될 예정이며,

○ 협정문의 한글본은 금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, 번역·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임

□ 양국 정부는 2015년 **상반기 중 한-중 FTA 협정문**(영문본·한글본·중문본)**의 정식 서명**을 추진키로 했으며,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**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**될 예정임

[상품 양허 : 거대 중국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]

❖ **품목수 기준 91%(7,428개), 수입액 기준 85%(1,417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**

❖ **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,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**

❖ **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,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**

□ 양측은 **모델리티 자유화율 이상의 관세 철폐**에 합의함으로써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

* 자유화율(품목수, 수입액, %) : 모델리티(90, 85), 중국(91, 85), 우리측(92, 91)

○ **(중국) 품목수 71%(5,846개), 수입액 66%(1,105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, 품목수 91%(7,428개), 수입액 85%(1,417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**

○ **(한국) 품목수 79%(9,690개), 수입액 77%(623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철폐, 품목수 92%(11,272개), 수입액 91%(736억불)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**

품목군		우리		중국	
		품목수	수입액	품목수	수입액
일반품목(NT)	즉시	6,108 (49.9%)	418.5억불 (51.8%)	1,649 (20.1%)	733.7억불 (44.0%)
	5년	1,433 (11.7%)	31억불 (3.8%)	1,679 (20.5%)	58.3억불 (3.5%)
	10년	2,149 (17.6%)	173.3억불 (21.5%)	2,518 (30.7%)	312.5억불 (18.7%)
	소계	9,690 (79.2%)	622.8억불 (77.1%)	5,846 (71.3%)	1,104.5억불 (66.2%)
민감품목(ST)	15년	1,106 (9.0%)	79.5억불 (9.8%)	1,108 (13.5%)	219.2억불 (13.1%)
	20년	476 (3.9%)	34.1억불 (4.2%)	474 (5.8%)	93.75억불 (5.6%)
	소계	1,582 (12.9%)	113.6억불 (14.0%)	1,582 (19.3%)	312.9억불 (18.7%)
자유화율(NT+ST)		11,272 (92.2%)	736.4억불 (91.2%)	7,428 (90.7%)	1,417.4억불 (85%)
초민감품목(HST)		960 (7.8%)	71.3억불 (8.8%)	766 (9.3%)	250.1억불 (15.0%)
합계		12,232 (100%)	807.7억불 (100%)	8,194 (100%)	1,667.5억불 (100%)

□ 한-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**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(linear cut) 방식**으로, **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**가 적용되고, **차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**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.

○ 예를 들어 **금년 중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**,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, **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** 전체적으로 **관세철폐 일정이 당겨지는 효과**가 발생

□ **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양측의 시장 개방 결과**는 다음과 같음

① **(철강) 중국은 냉연강판,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및 범용제품인 후판 등을 개방.** 우리는 중소·중견 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 등 **합금철은 장기양허**,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**주철관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**

② **(석유화학) 對中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3배 이상 큰** 양국간 교역 현황을 고려하여, **중국의 일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**(이온교환수지, 고흡수성수지, 폴리우레탄 등) **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. 초산에틸 등 우리 중소업체의 민감 제품은 보호**

③ **(섬유)** 對중 **주력 수출품목**(편직물) **및 유망품목**(기능성 의류, 유아복 등)을 포함한 **대부분의 중국시장을 개방. 우리는** 순면사, 의류(직물제·편직제), 모사, 면직물 등 **민감한 품목은 부분감축 또는 양허제외**

④ **(기계)** '13년 **약 56억불 규모의 對中 무역흑자를 기록한** 분야로서, **중국은 자국 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(포장기계, 환경오염 저감 장비 등)를 개방.** 우리는 **중소기업 제품인 기계 요소(볼 베어링 및 부분품) 및 전동공구(전기드릴 및 기타)** 등을 보호

⑤ **(자동차·부품)**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, 우리는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, **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·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**

⑥ **(전자전기) 중국은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(전기밥솥, 세탁기, 냉장고 등) 및 의료기기, 가전 부품 등을 개방. 우리는 전동기·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·장기 관세 철폐**로 보호

⑦ **(생활용품) 중측은 콘텍트렌즈,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.** 우리는 핸드백(기타가죽), 골프채 등 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(15~20년) 관세 철폐

* '13년 중국 생활용품 시장 규모는 우리(31조원)보다 10배 이상 큰 316조원으로 추정

□ 농수산 분야에 대한 **양측의 시장개방 결과**는 다음과 같음

① **(농업)** 우리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**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.**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(쌀, 설탕, 밀가루, 담배)을 제외하고 **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**

- **중국은 품목수 기준 91%를 자유화** (냉동고기, 과실류,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,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)
- 우리는 **고추, 마늘, 양파, 사과, 감귤, 배, 쇠고기,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**하여 보호

② **(수산업)** 우리는 주요 수산물을 보호, **중국은 100%(수입액 기준) 개방**

- 중국은 김, 미역, 넙치, 전복, 해삼 등 **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**

- 우리는 오징어, 넙치, 멸치, 갈치, 김, 고등어, 꽃게 등 **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**하여 보호

[원산지 : 투명성, 중립성, 기업친화성 확보 / 개성공단 특혜관세]

❖ 양국의 **교역구조**,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**일관성** 등을 고려하여 **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**

* 특혜관세 **신청 절차상 특례**를 통해 對中 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 가능

❖ **개성공단** 생산 제품은 **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 향유 가능**
(우리 기체결 FTA 중에서 **가장 많은 품목수**를 포함하는 등 **가장 좋은 조건으로 합의** 도출)

□ **(규정)**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**원산지 판정의 기준**(rules) 규정

○ **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***과 **보충적 원산지기준****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(rules) 규정

*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(PSR 충족 전제)

** 미소기준, 누적, 불인정공정, 대체재, 간접재,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

○ **EEZ 기국주의,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** 등 우리 旣체결 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

□ **(절차)**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**수출입 절차상의 편의**를 위해 **특혜관세 신청**에 관한 **특례 규정** 명시

○ **미화 700불* 이하 수출 물품**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**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**

* 중국 기체결 FTA의 기준이 대부분 600불 이하인 점,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을 감안하고서도, 비교적 높게 기준을 설정하여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의 혜택을 넓힘

○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부터 **1년 이내에 사후신청**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가능

○ 한편, **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**하기 위한 **사후 검증 시스템**을 마련, 특히 **중국 기체결 FTA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절차 도입**

○ **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**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**관세당국간 협의 절차** 및 **위원회 조항 마련**

□ **(개성공단)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**하여 **협정 발효와 동시에**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**특혜관세 혜택을 부여**하기로 합의

○ **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(HS 코드 6단위 기준)에 대해 원산지 지위**를 부여하기로 하여 **우리의 기체결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 도출**

* 한-EFTA : 267개, 한-인도 : 108개, 한-ASEAN, 페루, 콜롬비아 : 100개

○ **원산지지위 인정기준**은 ① 비원산지재료* 가치가 수출가격(FOB)의 40% 이하와 ② 원산지재료** 가치가 총재료가치의 60%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

-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되어 **기체결 FTA 규정에 비해 유리**

* 한-EFTA, ASEAN, 인도, 페루, 콜롬비아 FTA 등 기체결 FTA에서는 「비원산지 투입 가치」로 규정되어 개성공단 임금, 수송비 등이 포함

** 원산지재료에 중국産 재료도 포함되므로 우리 업체의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

○ **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**를 통해 추후 한·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 확보

[서비스 : 성장 확대 예상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]

❖ 양측 모두 **DDA 플러스 수준**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**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·건설·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 약속**했으며, **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 확보**

❖ **중국 FTA 최초 금융·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**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하여 **금융 및 통신 분야 시장 진출 기반 조성**

❖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**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在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**하고, **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**하되 **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**

□ **(서비스)** 양측 모두 **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**하였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결과는 다음과 같음

분야	반영 내용
법률	▸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사업 가능 (상하이 FTZ에 한정)
건축/엔지니어링	▸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
건설	▸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▸상하이 FTZ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(외국 투자 50% 이상)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
환경	▸폐수, 고형 폐기물처리, 배기가스 정화, 소음저감,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%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
유통	▸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
엔터테인먼트	▸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% 지분 한국기업 허용

□ **(금융)** 금융서비스 규제완화,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치,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여 **양국 금융산업에 대한 시장접근 기반을 개선**

□ **(통신)** 상대국의 망·서비스에 비차별적 접근 보장, 비차별적 상호접속 제공 의무, 교차보조 금지를 통해 **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 조성**

□ **(자연인의 이동)** 비자원활화, 상용방문자 등의 일시입국과 체류허용 요건 등을 규정했으며, 단순 인력의 입국·체류 관련 내용은 불포함

○ **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주재(당초 1년) 허용**에 합의하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손톱밑 가시 제거

□ 중국이 negative 방식으로 법규 및 제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단계에서 positive 자유화방식으로 규정하고, **후속협상을 통해 negative 자유화방식*으로 전환**키로 합의

* 중국의 FTA 최초로 서비스 분야의 negative 방식 채택에 합의

** 후속협상은 본 협정 발효 2년내 개시하며, 개시 후 2년내 마무리

[기타분야 : 중국의 기체결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규범내용을 포함]

□ 기타분야의 주요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음

① **(통관 및 무역원활화)** ▲**일관성**(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보장), ▲**원활화·투명성**(통관 절차 원활화,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), ▲**관세위원회**(FTA 이행을 위한 "관세위원회" 및 "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" 설치) 확보

- 상품의 반출시 **전자적 서류제출, '48시간내 통관' 원칙** 및 **'부두직통관제'**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

② **(지재권) WTO 지재권 협정(TRIPS) 수준을 상회**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,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

- **저작권·저작인접권 권리 추정 규정**을 도입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, **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**를 인정하였으며, **방송신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***

* **'저작권과 저작인접권(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)'을 강화**하여 **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**을 마련

- **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**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**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** 등을 명시하여 중국기업의 권리남용을 방지

③ **(경쟁)**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**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**를 마련하였고, **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**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

④ **(관광)** 중국은 **한국 관광회사의 중국인 해외여행 영업 신청을 장려**하고 **동 신청에 대한 허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**하여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고 이를 경제협력챕터 포함시킴

⑤ **(TBT) 전기용품**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, **자동차 부품**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, **화장품·의약품** 허가신청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해소 가능

- 또한 **기술규정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(60일)을 명확히** 하고, **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**와 **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⑥ **(SPS)** WTO/SPS 협정 적용 재확인,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,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**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정**

-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**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** WTO/SPS 협정 이상의 **추가적인 의무 부담없이 타결**

⑦ **(환경)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, 다자환경협약 준수, 환경법 효과적 집행** 등 의무를 규정하고, **환경협력 강화**와 **환경위원회 설치**를 포함

-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, **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, 다자환경협약 준수**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
⑧ **(분쟁해결)**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, **신속한 분쟁 해결** 유도, **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(Mediation) 제도를 도입**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

* ▲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의 답변의무(10일 내), ▲최종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,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

[향후 계획]

□ 정부는 금번 한-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**'영향 평가'**와 **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** 등을 수립할 계획임

○ 특히, 금번 영향평가는 **산업부가 주관하여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**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농촌경제연구원, 해양수산개발원)이 **모두 참여**하는 형태로 진행하여,

○ 한-중 FTA에 따른 **거시경제적 영향**과 **각 산업별 영향**은 물론 **국내보완대책간**의 **정합성과 일관성**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

□ 한-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, **對中 수출 활성화, 외국인 투자 유치,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** 등 **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**하고,

○ **농수산업, 영세제조업 등**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**국내 보완대책을 수립**할 예정임

□ 향후, **국회 비준동의 요청**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**우리 기업들이 한-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**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

※ 참고(별도책자)
1. 한·중 FTA 의의
2. 한·중 FTA 상품양허 협상결과 요약표
3. 한·중 FTA 주요 업종별 설명자료
4. 한·중 FTA 관련 Q&A
5. 한·중 FTA 주요 통계 (끝)

< 관련 분야별 연락처>

구분		연 락 처	
협상 관련	종 합	▪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	02-734-1864, 1865
	상품양허	▪ 산업부 FTA상품과	044-203-5797, 5798
	원 산 지	▪ 산업부 FTA무역규범과	044-203-5824, 5827
		▪ 기재부 양자관세협력과	044-215-4470, 4473
	서비스·투자	▪ 산업부 FTA서비스투자과	044-203-5819, 5813
		▪ 기재부 통상정책과	044-215-7670, 7674
	기타 규범	▪ 산업부 FTA무역규범과	044-203-5825, 5822
업종별	농축식품	▪ 농림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	044-201-2067
		▪ 산림청 임업통상팀	042-481-4085
	수 산 업	▪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	044-200-5383, 5386
	섬 유	▪ 산업부 섬유세라믹과	044-203-4294, 4297
	세 라 믹	▪ 산업부 섬유세라믹과	044-203-4295, 4297
	철 강	▪ 산업부 철강화학과	044-203-4286, 4282
	전자전기	▪ 산업부 전자전기과	044-203-4342, 4349
	석유화학	▪ 산업부 철강화학과	044-203-4284, 4288
	자 동 차	▪ 산업부 자동차항공과	044-203-4323, 4328
	생활용품	▪ 산업부 디자인생활산업과	044-203-4374, 4375
	기 계	▪ 산업부 기계로봇과	044-203-4316, 4319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관계부처 담당과 또는 상기 분야별 담당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